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 30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우리자산신탁㈜

2. 조치내용

○ (원안의결)「자본시장법」 제108조에 따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㈜에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

□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*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*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

① 우리자산신탁㈜(이하 '회사') 甲은 ㉮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의 위탁자 등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3개 법인 A, B, C를 통해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총 ○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,

② 乙은 ㉯ 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신탁사업의 위탁자 등(D법인 등)으로부터 본인계좌 및 甲과 함께 공동지배한 법인 A를 통해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총 ○원을 수취하여 부당한

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,

③ 丙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㈏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E 등으로부터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20XX.XX.XX. ~20XX.XX.XX. 기간 중 총 ○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10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09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3항 제4호, 「금융투자업 규정」 제4-92조(신탁업자의 이익제공·수령 기준) 제1항 및 제4항,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68조(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) 제1항